

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KEB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: 2019년 4월 15일
3. 기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자격확인서류 변경 및 세제혜택 변경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 적용범위 ~ 제 2 조 예금의 종류 (생략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</p> <p>(1)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,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.</p> <p>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</p> <p>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“『장병내일준비적금』가입·재정지원 자격확인서” 원본 제출</p> <p>(2)~(3) (생략)</p>	<p>제 1 조 적용범위 ~ 제 2 조 예금의 종류 (좌동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</p> <p>(1)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,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.</p> <p>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</p> <p>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“『장병내일준비적금』가입자격 확인서” 원본 제출</p> <p>(2)~(3) (좌동)</p>	<p>자격확인 서류변경</p>
<p>제 4 조 계약기간 ~ 제 9 조 만기 후 이율 (생략)</p> <p>제 10 조 세율의 적용</p> <p>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「소득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되나, 향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 4 조 계약기간 ~ 제 9 조 만기 후 이율 (좌동)</p> <p>제 10 조 세율의 적용</p> <p>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능하며,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추후 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p> <p>(1)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</p>	<p>비과세 반영</p>

	(2)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	
--	---	--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u>제 11 조 제한사항</u>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이 예금은 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가입.재정지원 자격 확인서’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, 해지 시 재정지원금 및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</p> <p>따라서 이 적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.</p>	<p><u>제 11 조 제한사항</u></p> <p>(1) (좌동)</p> <p>(2)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.</p>	<p>내용 변경</p>